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vol.20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2019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은 다시 필니다.  
그 꽃향기에 시름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봄꽃처럼 반가운 소식을 가득 담아  
당신에게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2019년 Vol. 20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PART 1

- 04 권두사 · 이준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 06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08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09 SPECIAL 틈새 회화

## PART 2

- 10 협회 소식
- 18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2 SPECIAL 부산의 명소(전포카페거리)
- 24 SPECIAL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내셔널 네덜란드 빌딩)
- 25 SPECIAL 쉬어가는 유머



12



14

## PART 3

- 26 전문건설인의 삶 · 건삼인 제37호 (주)덕택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 건삼인 제38호 거북건설(주) 대표이사 이주상
- 30 건설산업정보 - Part.1
- 40 건설산업정보 - Part.2
- 54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7 SPECIAL 건강 지킴이
- 58 SPECIAL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59 SPECIAL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해법)
- 60 SPECIAL 취미의 발견



22

## PART 4

- 62 회원사 현황
- 68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70 SPECIAL 의료 업무협약(MOU) 체결 안내
- 71 SPECIAL 틈새 스트레칭
- 72 SPECIAL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73 SPECIAL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4분기 주요 일정 안내
- 74 SPECIAL 독자와 함께



“  
지역 건설산업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

◆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1,900여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올해는 각종 지표조사에서 국내 건설산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부의 SOC사업도 그 전망이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 발전 없이는 국가 경제도, 지역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법인데 걱정이 큼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 관급공사 발주량이 전년보다 50%가량 대폭 증가되어 지역 업체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 업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1군 건설대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중소전문건설 Scale up”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사업과 연계한 “스타전문(설비)건설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및 대형공사장 하도급 실태 점검 확대를 통하여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 사업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원방안 모색 등 협회와 함께 지역 하도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준 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인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편에 서서 하도급 거래 등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문제를 알고도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때도 많아 늘 아쉽고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하도급 업체의 지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급법령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관행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 분야에서 6개의 업종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 하도급법령의 변화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시행될 '부당특약 고시'에는 그간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혀온 새로운 형태의 부당특약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앞으로 중소 건설사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도급 법령과 제도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원사들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지원 사업이 전문 건설협회의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공정위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의 94%가 한 해 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해 전의 55.9%에서 9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만, 거래관행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공정거래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지역 건설업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종 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  
상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송정은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3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위>와 <4위>는 지난 호에 실린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차지했습니다.



##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 다산북스 | 16,000원

삶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도출하는 법을 알려 주는 실용 철학서. 철학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학문이라는 말을 강하게 부정하는 저자는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오히려 그는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법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말한다.



## 인어가 잠든 집



히가시노 게이고 | 재인 | 17,800원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인어가 잠든 집』은 사랑하는 딸에게 닥친 ‘뇌사’라는 비극에 직면한 부부가 겪는 가혹한 운명 그리고 충격과 감동의 결말을 그려낸 휴먼 미스터리다. 이 소설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넘어서선 집착과 광기를 과거 어느 문학 작품보다도 절절하고 가슴 아프게 그려낸 한편의 아름답고도 장엄한 서사시이자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묘사한 고전 비극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 BESTSELLER BOOK

BEST  
5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 스몰빅라이프 | 14,500원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단순히 말솜씨나 말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술이 아니다. 대신 저자는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대화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대화의 원칙들을 제시한다. 그런 대화의 원칙들을 지킨다면 말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실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BEST  
6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 책구루 | 16,500원

『공부머리 독서법』은 12년 동안 최승필 작가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논술 수업을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한 독서교육 지침서다. 어린이 책 작가이면서 세 아이에게 매일 책을 읽어줘야 하는 아빠답게 『공부머리 독서법』에는 아이와 학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문장이 자주 눈에 띈다. 저자는 진정성 담긴 글을 통해 독서교육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통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 다시, 봄

개봉 | 2019.04.18. 감독 | 정용주 출연 | 이청아, 홍종현, 박경혜

당신의 인생에 만약을 선물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딸을 사고로 잃은 후 절망에 빠진 '은조'(이청아). 중대한 결심을 한 그날, 눈을 떠보니 시간이 어제로 되돌아갔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된 은조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제를 바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계속 어제로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여행에 관한 미스터리한 열쇠를 줬던 남자 '호민'(홍종현)을 만나게 된다. 은조는 시간을 되돌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영화 <다시, 봄>은 어제의 어제로 인생을 역주행한다는 설정이다. 인생의 '만약'이 실현되는 순간의 판타지와 위로를 선사하며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다. 불행한 오늘에 던져진 '만약'이 주는 희망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 '은조'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넬 것이다.



## 크게 될 놈

개봉 | 2019.04.18. 감독 | 강지은 출연 | 김해숙, 손호준, 남보라

“엄니, 두고 보소. 내가 어떤 놈이 돼서 돌아오는지.”

전라도 어느 섬마을, 기강과 기순 남매의 어머니 '순옥'(김해숙), 순옥의 사고뭉치 아들 '기강'(손호준)이 있다. 집을 나간 기강은 성공만을 꿈꾸다 결국 범죄자로 전락해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정부는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로 자포자기한 기강에게 어머니의 생애 첫 편지가 도착한다. 영화 <크게 될 놈>은 헛된 기대만 품고 살아온 끝에 사형수가 된 아들과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애 처음 글을 배우는 까막눈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다. 스스로도 놓아버린 벼랑 끝 막장 인생에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실제 사형수의 사연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그 부름만으로도 가슴 먹먹해지는 존재인 '엄마'와 회한 가득한 '아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그리며 따스한 감동을 예고한다.





## 중국어 기초 인사말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인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상황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 您好! / Nín hǎo / 닌 하오 ※ 호칭은 이름을 빼고 성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첫 만남 “처음 뵙겠습니다.”	- 初次见面。 / Chūcìjiàn miàn / 추츠젠멘
감사 “고맙습니다.”	- 謝謝。 / Xièxiè / 셰셰 ※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다.
안부 “잘 지내세요?”	- 您过得好吗? / Nín guò de hǎo ma? / 닌 꺄더 하오마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 对不起。 / Duìbuqǐ / 뒤이부치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 早上好。 / Zǎoshang hǎo / 자오상 하오
헤어질 때 “또 뵙겠습니다.”	- 再見。 / Zàijiàn / 짜이젠



## 중국인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 TIP. 01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하며, 악수를 할 경우에는 뒷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TIP. 03

중국인과 미팅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좋아요(好好。/Hǎo hǎo/하오 하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단지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 TIP. 05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중국인들에게 바로 말하는 것은 결례이다. 중국의 정책 및 중국의 법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가볍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주석이란 칭호를 붙여서 불러야 하며, 정치적 대화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 TIP. 02

면전에서 직접적인 ‘아니오(不是。/bù shì/부스)’는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인 사이에서는 용인되지 않는다.

### TIP. 04

중국인은 자신의 정치체제에 외국인이 월가월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선호하는 대화 주제로는 오랜 역사, 다양한 음식 문화, 중국의 위상 등이 있다.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2019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월 7일(10:3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2019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 및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일정 등을 보고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4회 정기총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 2019회계연도 회장단 및 감사 연석 간담회

부산시회는 1월 7일 「2019회계연도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도 우리 시회 주요 일정(안) 및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 2019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월 11일(10:00 / 협회 회의실) 운영위원 20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준예산 편성·운영 및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 2019년 신년인사회

부산시회는 1월 11일(11:3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제11대 대표회  
원, 부산광역시 건설관계관 및 협회 자문단(변호사, 노무사, 회계·세무사)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김세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까지 더해지며 많은 변화와 혼란  
이 예상되지만, 우리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들이 함께 한목소리로 내실을 다지고  
우리의 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2019년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하며 2019년(己亥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떡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 제34회 정기총회

부산시회는 1월 23일(11:00 /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중앙회 김영  
운 회장과 부산광역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이현승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등 내빈과 부산시회 대표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정기총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에는 회원사 일거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  
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줄어든 발주물량을 지역하도급 증대로 돌파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여러 발주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일거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과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부산지역 건  
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부인사와 회원사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 • 회원사 수상자 명단

### 중앙회장 우수회원사 포상



(주)현대금속  
이종덕 대표이사



(주)명원건설  
김명수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장 2018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거보건설(주)  
정영만 대표이사



(주)보광  
윤영갑 대표이사



상화건설(주)  
정인호 대표이사



(주)덕재건설  
김문석 대표이사



(주)일상건설  
김철호 대표이사



삼지건설(주)  
박지한 부사장

### 부산광역시회장 우수회원사 포상



아후건설(주)  
김병홍 대표이사



원봉석재  
안성관 대표



(주)동영산업건설  
강재준 대표이사



민성건설(주)  
서영철 대표이사



승화건설(주)  
김영운 대표이사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대표이사



(주)세광  
엄세현 대표이사



(주)이플랜  
유진철 대표이사



신평건설(주)  
정길한 대표이사



대저조경  
이윤수 대표



## 협회 소식



###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강습회

부산시회는 2월 22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5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산재·고용보험 확정·개산 신고업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후정산 및 공단의 건설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습회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은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19년 이웃돕기성금 고액납부 회원사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5일(12:00 / 월강초밥) 「2019년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에서 고액 기부한 회원사 대표 1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오찬회를 개최했다.

부산시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고, 총 152개사가 동참했으며 3,667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협회의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모금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19회계연도 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는 3월 19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오지탐험가로 유명한 (주)사라토가 도용복 회장을 초빙하여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시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도용복 회장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2019년 건설안전기원제

부산시회는 3월 25일(10:00 / 황령산 봉수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관계관 및 제11대 대표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1,900여 전문건설인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2019년 건설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민·관 합동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부산시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3개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단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 및 점검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으며, 조사단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시공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박재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침체된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적극 노력해 달라”며 “전문건설업계도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며,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의무화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등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오늘 청취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협회 소식

### 회장동정



### KOSCA 중앙회 2019년 신년인사회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은 1월 4일 중앙회(회장 김영운)에서 개최한 「2019 KOSCA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기해년 협회 발전을 위한 기념떡 커팅식을 가졌다.



### 한국도로공사 사장 간담회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3월 22일(12:30 /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김영운 중앙회장, 이서길(광주)-김태경(전북)-이정철(경북) 등 각 시도 회장 및 김영일 전건설 적정공사비 TF 위원장과 함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계 현안을 건의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공사 전문건설업체에 발주 △공기연장 시 하수급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속 발주 △표준품셈 개정 관련 협조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등 전문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회원소식



### 2019년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3월 13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9년 제1차 부산 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경상북도 청도 8경 중 하나인 남산에서 한재고개 능선을 타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산행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면서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행 후에는 친환경 건설신기술(BIPV: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을 선도하는 (주)에이비엠(대표 김병철) 밀양공장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사회공헌활동**

## 2019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사회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회원사 모두의 온정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월 2일부터 7주간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2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3,667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은 교육메세나 활동, 취약계층 생계 및 주거환경 지원기관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 • 2019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참여 회원사 명단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3,000,000
2	(주)청복건설	정귀자	1,100,000
3	(주)에이비엠	김병철	1,000,000
4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1,000,000
5	(주)주일건설	박강일	1,000,000
6	강호건설(주)	강성호	1,000,000
7	(주)금호지질	허성하	1,000,000
8	(주)제일공사	박수근	1,000,000
9	(주)삼성도장	이관옥	1,000,000
10	거북건설(주)	이주상	1,000,000
11	금탑건설(주)	이종범	1,000,000
12	(주)덕재건설	김운석	1,000,000
13	라이프조경(주)	전종훈	1,000,000
14	새벽건설(주)	김정수	1,000,000
15	옥산건설(주)	유재봉	500,000
16	(주)성덕건설	김경식	500,000
17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500,000
18	(주)건양산업	정종원	500,000
19	건진개발(주)	심수율	500,000
20	동림건설(주)	최문학	500,000
21	(주)보광	윤영갑	500,000
22	삼지건설(주)	이태원	500,000
23	석봉건설(주)	한상호	500,000
24	영빈건설(주)	김재진	500,000
25	예인건설(주)	허성규	500,000
26	천지개발(주)	임철규	500,000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27	태영건업(주)	박판용	500,000
28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500,000
29	(주)흥산건설산업	강용호	500,000
30	(주)사오건설	오태진	450,000
31	거보건설(주)	정영만	300,000
32	(주)대신산업개발	박성열	300,000
33	(주)대양산업건설	오종출	300,000
34	대저조경	이윤수	300,000
35	(주)신아건업	윤정필	300,000
36	신평건설(주)	정길찬	300,000
37	야후건설(주)	김병흠	300,000
38	은산건업(주)	박병길	300,000
39	(주)금정토건	문준식	200,000
40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	이규화, 이동화	200,000
41	동우기업	최원용	200,000
42	명작건설(주)	박정구	200,000
43	(주)모닝	손성우	200,000
44	(주)삼신퍼스텔	임호성	200,000
45	(주)수진건설	김상욱	200,000
46	승화건설(주)	김영운	200,000
47	신신이앤지(주)	고정자	200,000
48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200,000
49	(주)천진	심재복	200,000
50	태영토건(주)	진성희	200,000
51	(주)한수유니텍	손영규	200,000
52	(주)서한기업	서쌍철	150,000

# 협회 소식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53	(주)가진건설	이만희	100,000
54	경민건설산업(주)	김규철	100,000
55	고려토건(주)	이미영	100,000
56	(주)광승이엔지	정점근	100,000
57	(주)그루빅건설	김정규	100,000
58	금강가구(주)	김정규	100,000
59	(주)남일	최상덕	100,000
60	다풍건설(주)	태상덕	100,000
61	(주)대왕석재	양정식	100,000
62	(주)대정이엔씨	김미진	100,000
63	동남창호(주)	나기주	100,000
64	(주)디엠플랜	박형용	100,000
65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100,000
66	(주)마인	정일섭	100,000
67	무성토건(주)	김종한	100,000
68	백송산업(주)	강병우	100,000
69	범창종합건설(주)	임영희	100,000
70	부성창호(주)	고판순	100,000
71	(주)비엠	배미애	100,000
72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100,000
73	사직건설(주)	배병운	100,000
74	상화건설(주)	정인호	100,000
75	(주)삼강기업	김점식	100,000
76	(주)서해건설	전홍석	100,000
77	(주)성심	정진상	100,000
78	(주)성환이앤씨	조운영	100,000
79	(주)세광	엄세현	100,000
80	소원건설(주)	최민식	100,000
81	신우개발	김문곤	100,000
82	신창건영(주)	노현숙	100,000
83	(주)신흥산업	강신모	100,000
84	(주)연동	반백철	100,000
85	(주)용광사	김원호	100,000
86	(주)원태건설	지미선	100,000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87	(주)유영토건	최기남	100,000
88	(주)유진기업	추태석	100,000
89	유창중건설	김영주	100,000
90	조이엔지니어링	조진숙	100,000
91	(주)중앙제이에스케이건설	남기용	100,000
92	(주)진평건업	하진근	100,000
93	(주)창성공영	안병호	100,000
94	(주)청산산업	강성구	100,000
95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100,000
96	한국라이텍개발(주)	황성도	100,000
97	한림정공(주)	강정민	100,000
98	(주)한일개발	이종철	100,000
99	해진건설(주)	이상호	100,000
100	(주)화성건설	변용규	100,000
101	(주)흥림건설	강갑균	100,000
102	원원건설	전형문	70,000
103	가양건설(주)	김기량	50,000
104	(주)경방수도사	임홍규	50,000
105	경북개발(주)	임복근	50,000
106	(주)고센건설	지재성	50,000
107	(주)구호설비	박명숙	50,000
108	(주)국일에스에프건설	이기덕	50,000
109	(주)금광환경	김형준	50,000
110	(주)금원건설	정영근	50,000
111	(주)금하수도	김은주	50,000
112	(합자)기경건설	황봉욱	50,000
113	남우건설(주)	하익수	50,000
114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50,000
115	(주)다담건설	김옥경	50,000
116	대명토건(주)	강진구	50,000
117	대산건설	신현상	50,000
118	대성산업종합환경	박쌍윤	50,000
119	동신조경(주)	이동현	50,000
120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50,000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21	(주)두로건설	윤종길	50,000
122	두풍개발(주)	허승구	50,000
123	(주)목림건설	박용순	50,000
124	민성건설(주)	서영철	50,000
125	백중건설(주)	손원철	50,000
126	(주)부근건설	신중근	50,000
127	부영ENG	손문기	50,000
128	서연건설(주)	황경숙	50,000
129	(주)서진조경	류향복	50,000
130	설원건설(주)	박정두	50,000
131	(주)성신창업	김홍수	50,000
132	(주)성진이노테크	육성진	50,000
133	성훈건설(주)	김철훈	50,000
134	(주)아랑존디	우범용	50,000
135	(주)아이에스디자인	석철환	50,000
136	(주)에디스	성민구	50,000
137	(주)영주	정태환	50,000

고액, 상호순 / 단위: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38	(주)영진종합토건	박기석	50,000
139	원토건설(주)	김순애	50,000
140	은진개발(주)	조증언	50,000
141	재광건설(주)	김은석	50,000
142	(주)청호이엔지	손승욱	50,000
143	(주)태벽건설	백성호	50,000
144	태성토건(주)	김기묵	50,000
145	(주)태은건설	양현숙	50,000
146	(주)태화건설	성혜자	50,000
147	(주)한미피앤씨	김영덕	50,000
148	(주)한서개발	이삼규	50,000
149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50,000
150	(주)한하산업	김정실	50,000
151	화성포장건설(주)	노대환	50,000
152	(주)해신석재	조영철	50,000
<b>합 계</b>			<b>36,670,000</b>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수주지원

### 01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1월 10일, 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80여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켜 건설공사의 실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02 화장실 개·보수 등 실내 리모델링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발주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53곳,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037곳에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1월 24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사회복지관(53곳),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1,037곳) 등에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교사보수공사, 리모델링 등) 발주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차 또는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회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발주하는 교사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내건축공사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건의 결과, 실내 개보수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의 입찰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었으며, 향후 동 공사의 입찰에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중요! 03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2019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1월 28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9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여 건설공사 수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1	부산광역시	32 건	95,531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304 건	502,022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31 건	3,194
4	부산광역시 구군청	491 건	210,102
5	부산 공기업(공사, 공단 등)	279 건	267,312
6	중앙 공기업(공사, 공단 등)	189 건	316,594
7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570 건	257,273
<b>계</b>		<b>1,896 건</b>	<b>1,652,028</b>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건축공사 착공 등 건설공사 정보제공 활용 안내

###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정보제공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업역 확대 및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2월 1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에 건설공사 착공정보 통보 협조를 추진하였으며, 동 내용을 회원사 e-mail과 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등 건설공사 정보를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사에서 는 수주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 ■ 건설공사 정보 확인 방법

- 우리 시회에 등록된 회원사 e-mail 확인
-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로그인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 입찰정보, 건축공사착공,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우리 시회에 등록된 e-mail이 없거나 등록된 e-mail 변경을 희망할 경우, 회원관리과 (☎051-633-02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 「일광지구 5BL, 6BL 조성공사」 부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 일광지구 조성공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지난 2018년 4월경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일광지구 5BL, 6BL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동 현장 시공사【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에서 조경식재공사 등 마감공종에 해당되는 일부 전문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회원사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시회는 2019년 2월 11일 「일광지구 5BL, 6BL 조성공사」의 발주자【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에 “발주 예정인 조경식재공사 등 마감공사에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향상 및 지역 경제발전 기여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06 부산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2월 1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추천함과 동시에 건설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07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 실내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보수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 입찰참여 기회 제공 협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실내리모델링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거나, 특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도 2월 19일 주요 발주 기관에 동 협조사항을 추진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은 대부분 기술협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실내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복개구조물·하수박스 보수보강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69건, 약 104억원, 2019년도(3월 기준)에는 13건, 약 22억원에 달하는 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 08

###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2월 26일 부산지역 130개 주요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 설계업무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113개)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 ■ 부산광역시 주요 발주기관에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 반영 건의”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현장 여건, 난이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품의 항목 누락, 품의 할증 미적용 등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산시회 회원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시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지세별, 지형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설계에 반영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 ■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에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품의 할증 적용 협조”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받아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예산에 맞춰 설계하기보다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품의를 반영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하여 설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 “건설공사 입찰참가 전 설계서 및 내역서 사전 확인 당부” 회원사에 안내

더불어, 시회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사전 열람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적자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중도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 09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공고 시 전문공사 업역 준수 추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3월 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관리·감독하는 소속 회원인 주택관리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적법한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추진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정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자재가격 및 운임비 포함)의 전문공사를 도급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를 안내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 전문건설업 보유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 해당되는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를 방문하여 “아파트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인 주택관리사에 동 내용의 홍보·지도와 문서 시행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 01 제도개선

### 01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2월 7일 국가계약법에서 2년 이내로 규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상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회 이찬열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부정당업자가 제재처분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한기간 상한 없이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는 것과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의 상한 없이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산하여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정당업자가 제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부정당업자의 제한기준 상한은 2년 이내로 현행 유지하여 줄 것과 여러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현행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0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현장설명회에서 구두 공시를 이유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신설 건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특수조건에 설계서와 다른 “구두 작업지시 등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조사가 있어 부산시회는 2월 8일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에서 구두로 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설계서(내역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량 등의 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경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 03

### 공정위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 관련 의견 제출

#### 추가공사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화 건의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체)는 당초 계약 물량보다 물량이 증가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은 구두작업 지시에도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공사비용을 전가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공사금액을 증액받지 못하거나 공사금액 조정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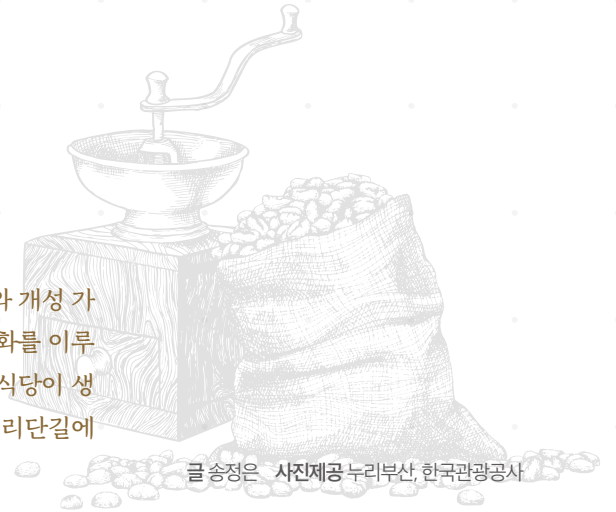
이에 부산시회는 3월 12일 이반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초 계약 물량보다 추가 시공된 부분은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로 인한 부분이므로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중앙회를 경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넓은 공구상의 방천신, 커피향 가득한

# 전포 카페거리

부산의 한 골목, 철을 깎는 쇠소리와 구수한 커피 냄새가 어우러지고 낡은 전파사와 개성 가득한 상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있다. 이질적인 상점 하나하나가 모여 묘한 조화를 이루는 '전포카페거리'다. 공업사와 철물점 등이 즐비했던 골목 곳곳에 소규모 카페와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됐다. 이색적인 이 거리,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에 빗대어 '전리단길'로 불리는 전포동 카페거리 루어를 떠나보자.



글 송정은 사진제공 누리부산, 한국관광공사







### ☕ 공구 골목의 놀라운 변신

전포카페거리는 십여 년 전만 해도 전자공구상가가 번성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상가의 주축이었던 버스 공장이 이전하며, 공구상가 역시 자연스레 이전 혹은 폐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도심의 뒷골목으로 남겨져있던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분 건 2009년 무렵, 젊은이들이 골목에 있는 허름한 점포를 소자본으로 빌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낡은 상가 사이로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을 갖춘 가게들이 자리 잡은 이색적인 풍경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전포카페거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골목마다 은은한 커피향이 흐르는 이곳에는 카페, 디저트 가게, 밥집 등 각종 가게 150여 개가 입점해 있다.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하다. 예쁜 간판들과 개성 있는 실내 인테리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며, 그 속에 문화와 인문학을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새록새록 움트고 있다.

### ☕ 각자의 개성이 만든 공간

투박하고 오래된 공업사가 준비한 거리, 얼마 남지 않은 상가엔 주인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은 카페와 공방들이 들어와 새로운 이웃이 되었다. 이질적인 공간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이 묘하게 눈길을 끈다. 카페거리는 2017년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 52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며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빈티지 감성과 아날로그의 편안함에 끌리는 '뉴트로' 시대의 감성이 제대로 통한 셈이다.

지금의 전포카페거리를 만든 것은 단연컨대 취향이다. 카페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이용하기도 편한 근처 변화가를 두고 굳이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빈다. 거리마다 비슷하게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결코 이 거리의 분위기를 흉내 낼 수 없다. 의외의 공간에 숨겨진 개성 넘치는 카페와 상점들은 전포카페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다. 복고풍 의상을 대여해주는 흑백사진관,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가게 가득 전시해둔 캐릭터 카페까지. 전포카페거리에서 주인의 취향은 곧 가게의 생존이다. 자신의 취향에 대한 애정과 확신은 불안한 취업 경쟁 속에서 오래오래 내 가게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게 한다.

### ☕ 카페와 공구골목의 아름다운 공존

낡은 골목에는 전자 부품과 공구를 찾던 나이 지긋한 어른신들 대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지금의 카페거리를 만든 건 단지 새로 들어온 개성 넘치는 가게들만이 아니다. 이색적인 골목 풍경을 만들어 낸 것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거리의 터줏대감들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공구상가로 불리는 부산전자·전기도매상가가 남아있다.

전포카페거리는 산업화 유산 위에 개척된 창조지대다. 이젠 오래된 공구가게 사이에 독립서점과 카페가 자리 잡은 모습이 묘하지만 어색하지 않다. 세대와 종목을 불문하고 옹기종기 모인 가게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산진구는 이곳을 세계적 카페지대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이며, 서면 근대산업 유산 추억길 코스에도 전포카페거리를 포함했다. 전포카페거리는 상업 관광지로서 품격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갖춘 명품 카페지대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

로맨틱한 도시 체코 프라하의 중심지에는 한쪽 옆구리가 움푹 들어간 독특한 건물이 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휘어져 원래 이름인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보다 댄싱 하우스로 유명해진 프라하의 랜드마크다. 지금의 댄싱 하우스 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폭격을 맞아 건물이 파괴된 상태로 5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 이에 바츨라프 하벨 초대 대통령은 프라하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도록 건물을 재건축하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다.

설계를 맡은 체코 건축가 블라드 밀루니크와 프랭크 게리는 볼타바강과 마주한 건물의 모서리를 두 개로 나눈 디자인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건축가들은 건물 모형을 살펴보다가 유리로 디자인한 타워 부분이 프라하성의 풍경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리 부분의 옆면을 눌러서 집어넣었다. 우연한 시도였지만 구조 전문가들과 찌그러진 형태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고, 그 결과 독특한 외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육안으로 보면 푸른색 유리 건물과 콘크리트 패널로 지어진 원통형 건물 두 개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꼭대기는 금속으로 된 열린 구 형태로, 밤이 되면 그 안에서는 조명이 켜진다. 표면이 유리로 된 주 건물은 물결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표면은 불규칙적으로 생긴 창문으로 덮여 있다.

댄싱 하우스는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프라하가 낙천적인 자유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남녀가 춤을 추는 듯한 파격적인 모습은 프라하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정치적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은 프라하 시민들이 가슴에 품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상징한다. 댄싱 하우스는 프라하 풍경과 어울리는 '로맨틱한 외관'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글 송정은

STORY  
01



## 택시기사와 할아버지

어느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이 9,000원 나왔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요금을  
 5,200원만 주는 것이 아닌가.  
 택시기사가 황급히 말했다.  
**“할아버지, 요금은 9,000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씨익 웃으면서 말했다.  
**“미터기에 3,800원부터 시작한 것  
 내가 다 봤다. 이눔아!”**

STORY  
02

## 늙을수록 필요한 것

<여자>

- ① 돈 ② 딸 ③ 건강 ④ 친구 ⑤ 찜질방

<남자>

- ① 부인 ② 아내 ③ 집사람 ④ 와이프 ⑤ 애들엄마





변화에 대응하며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난 건설인

## (주)덕재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법입니다.”



거친 시대를 헤쳐 온 강인한 기운이 엿보이는 모습. 첫인상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현장을 20년 이상 누빈 전문건설사 대표라기엔 꽤 젊었다. (주)덕재건설 김운석(54) 대표. 사명 ‘덕재(德齋)’는 그의 아호다. 동양철학을 하는 친구가 지어준 것으로, ‘큰 집 많이 지으면서 덕을 쌓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부산 토박이 김 대표는 못사는 집안 형편 때문에 돈에 한이 맺혔다. 남천초와 경남공고를 나와 대학에 들어갔지만, 다섯 식구가 단칸방 생활에 시달릴 정도로 가난에 찌들었다. 결국 휴학을 한 뒤 입대를 위해 병무청을 찾았는데, 여기서 인생 역

전의 기회를 맞았다. “사복 차림의 모병관이 ‘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하더군요. 귀가 솔깃해 그 자리서 오케이 했죠.” 복과공작원을 길러내는 그 유명한 첩보부대(HID)였다. 머리를 기르고, 계급장도 달지 않는 군인. 인명 살상 훈련만 하는 소름끼치는 부대. 휴가나 면회는 상상도 못 한다. 그렇게 내실악 부대에서 5년 넘게 죽음의 두려움을 ‘깡’으로 버텼다.

그는 주로 관문점 주변에서 대북 전선공작을 맡았다. 반장(교관) 출신이어서 일반 대원들보다 갑절 더 군에 있어야 했다. 별명은 ‘밤안개’. 지금도 HID에서 회자되는 전설적인 닉네임이란다. 능력이 오죽 뛰어났으면 부대에서 한 달간이나 읍소하며 군에 남아달라고 붙잡았을까. 하지만 그는 제안을 뿌리치고 거금 3,000만원을 손에 쥔 채 금의환향(?)했다.

노무현 정권 때 벌어졌던 퇴역군인들의 가스통 시위를 기억하시는지. 그런데 김 대표가 그 주역이었던다. 그 시위 덕분에 김 대표를 비롯한 HID 대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보상도 받았다.





각설하고, 제대한 김 대표는 복학하면서 젊은 나이에 합기도체육관을 차렸다. 합기도 공인 6단에 특수무술로 무장한 그였으니 펄펄 날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김 대표의 꿈을 이루기에 많이 부족했다. 돈을 더 벌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1992년 해운대 신시가지 대우 경남아파트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건설현장에서 ‘오야지(책임자)’로 뛰어들었다. HID 경험이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갖은 싸움판을 그가 모두 평정해버렸다.

그리고 1998년 본격적으로 면허를 내고 당차게 전문건설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당시 외환위기(IMF)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이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아빨싸! 때를 잘못 만났다. “오늘 멀쩡하던 회사가 다음날 부도나는 급박한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하니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더군요. 한때 빚이 30억원에 달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 열 배는 됐을 겁니다. 당시의 끔찍했던 경험 때문에 어음이나 당좌수표는 아예 눈길도 안 줘요.”

김 대표는 진저리쳤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질 수가 아니었다. ‘그 험한 HID에서도 교관을 지냈던 내가 아니더냐. 처자식을 굶게 할 수는 없다’

고 되씹으며 독기를 품었다. 빚 갚기 작전이 시작됐다. 잠은 하루 3시간만 잤다. 차 안에는 작업복과 양복, 평상복 등을 3벌 넣고 다녔다. 부산과 대구를 봉고차로 출퇴근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숙식했을 정도였다.

‘악바리’ 정신으로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난 김 대표! 회사를 어엿한 부산 중견 전문건설사로 키웠다. 한 해 매출액이 600억원을 넘나든다. 부산 철근콘크리트 회사 400여 개 중 10위 권, 전국 1,100개사 중 70위면 명함을 내밀 만 하지 않은가. 은행 신용도 역시 A 마이너스로 최고 수준이니 더 말해 뭣하랴.

성장 비결에 대해 묻자 그는 “시스템 관리”라고 못박았다. 현재 노조의 입김이 너무 드세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밝힌 그는 “타사와 차별화된 철저한 자재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기술과 관리 기법이 조화를 이뤄야 회사를 성공가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이니까요.”

그는 이제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한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죠.

그래서 부수적인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특히 준비와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 봉사활동에도 열정을 쏟는다. 부산시 축구협회 부회장인 그는 해운대 U-15 축구단장을 맡고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과 수중정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김 대표는 욕심을 버리는 자세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니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인색함이 없다. 회사 간부들이 대부분 그와 10년 이상 함께 뒀군. ‘현장 전우’들이다.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회사 전무에게도 꼬박꼬박 월급을 보낸다고. “51대 49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에게 51을 주고, 제가 49를 갖는 거죠. 조금 덜 받는 자세로 살면 기분도 좋고 마음이 무척 편해요.”

‘얼으려면 비워라’는 심오한 삶의 철학을 깨우친 건 삶인이라는 느낌이 든다. ‘차 있는데도 더욱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느니만 못하고, 날카로운 것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는 것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노자의 명언이 새삼 뇌리를 스쳐 간다.

글 · 최원열



●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한  
의지의 건설인

## 거북건설(주)

대표이사 이 주 상

“근성 하나만으로  
묵묵히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거북’ 하면 누구나 느낌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악착같은 끈기로 목표를 향해 쉽 없이 나아갔기에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 거북건설(주) 이주상(61) 대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동 악양 출신인 그는 중학교를 마친 뒤 먹고살기 위해 부산에 와 누나 집에서 숙식하며 막일에 나섰다. 범일동 남문시장 양장점에서 미싱일을 하는 등 쓰디쓴 인생 경험을 했다. 제대 후 누나 인쇄업을 도와주다 결혼했고, 2년 후 찾아가기 태어났지만 당시 월급이 고작 7만원밖에 안 돼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1985년 5월 ‘노가다’에 나선다. “일당

이 8천원이어서 월 20만원 벌이는 되더군요.” 너무나 고된 생활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오직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해 여름. 그의 인생에 일대 전기가 찾아왔다. 거북건설 전신인 동아수도에 일용직원으로 입사한 것이다. 일반전화가 귀하던 시절, 회사와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에 무조건 곡괭이와 삽, 지렛대를 들고 현장 출근해야 했다. 일이 없을 때는 할 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그래도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했다.

“당시 기술자들의 텃세가 무척 심했습니다. 절단 기술을 절대 안 가르쳐주더군요. 명키스패너, 파이프렌치, 수동파이프머신 다루는 법을 몰래 어깨너머로 훑쳐 배웠죠.” 악착같이 달라붙는 그에게 상사와 기술자들도 손을 들고 말았다. 그에게 일을 조금씩 맡기더니 결국 쇠를 달근 뒤 고압산소로 절단하는 그 당시는 ‘최고급 기술’을 전수해줬다. 하늘을 나는 듯한 그 기분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상차를 할 때 3인 1조로 움직이는데, 초보인 저를 ‘왕따’시키더라고요. 함께 일하지 않고 순서를 정해 한 명이 상차 작업을 전담하는 식으로 정합니다. 하루 일하고 5일



을 알아누웠더랬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5년 후 재회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땅파기 일꾼이었고, 저는 어엿한 배관공이 되어있더군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부산시 최고의 절단 기술자로 뛰어올랐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제가 나서면 손을 털고 떠날 정도로 믿어주더라고요. 주철관, 주물관, 강관 등 다루지 못한 게 없었니까요.” 이 대표의 보스이자 스승이었던 이호홍 당시 거북건설 대표가 거북수도를 설립한 뒤 그에게 면허를 넘겨줬다. 수정산터널 배수지공사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회사에 수익을 안겨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회사 지분을 제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더군요. 이후 거북건설도 그분에게서 인수했으니 제 건설 인생은 스승께서 이끌어주신 겁니다.” 당시 스승의 말은 이랬다. “네 기술로 거북건설이 그만큼 성장했다. 이제 네 것이니 네가 가져가라.” 참 멋들어진 기업인, 감동적인 표현이 아닌가!

기술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지만 이 대표는 뭔가 허전했다. 바로 학력 콤플렉스였다. 지적 허기에 굶주렸던 그는 학업 전선에 뛰어들기

로 결심했다. 2005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그는 김정고시를 거쳐 무려 45살에 수능시험을 치렀다. “가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당일 교문을 통과하려 하자 ‘학부모는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하더군요. 수험생이라며 수험표를 보여주시 깜짝 놀라면서 공손히 안내해줍니다.”

그는 동의과학대 야간 2년 과정에 이어 심화과정 2년을 마친 뒤 지도교수 추천장을 들고 부산대 대학원을 드드렸고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2년 반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만학도의 꿈을 이룬 이 대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데 성공!

그에게는 특별한 좌우명이 있다. 꼬깃꼬깃 접힌 빛바랜 갱지에 쓰인 글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원본은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고, 복사본은 자신의 책상 유리판 아래 붙여놨다. 그리고 수시로 꺼내 보며 자신을 다그친다. 스승이 가르쳐 준 경구다. “실력이 최고라며 빠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승께서 저를 불러내서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사항을 갱지에 쓰시더니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남에게 자상하게 대하라. 둘째,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판단하라. 셋째, 사람이 자산이다. 스승이 내갈겨 쓴 갱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자, 얼른 주워 신줏단지 모시듯 평생의 금언으로 삼고 있다.

그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몰락하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몰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성공에의 도취가 몰락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다. 더는 올라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만사형통할 듯이 보인다. 그때부터 빠 빠지게 고생할 때 지켰던 원칙은 무시되고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그렇다! 당시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우치고 가슴에 새겼기에 오늘의 이 대표가 있지 않나 싶다.

글 · 최원열





중요!

01

## 지방계약법 개정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건설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6042호(2018.12.24.)

- 1.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 제2항 신설)
    -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 2.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법률 상향**(제31조 제1항 개정)
  - 3.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제31조 제6항 신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 제공 등의 행위는 7년)
  - 4.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제31조 제7항 신설)
  -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의5 신설)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제34조의2 신설, 제3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
  - 7. 시행일자:** 2019.06.25.부터
    - ※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12.24.부터 시행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 변경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을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경고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2018.12.19.)

- 1.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추정가격) 변경**
  - 중앙행정기관: 80억원 이상 ⇒ 78억원 이상
  - 공공기관: 240억원 이상 ⇒ 235억원 이상
- 2.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기준금액(추정가격) 변경**

대상기관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17~'18	'19~'20	'17~'18	'19~'20
중앙행정기관	80억원 미만	78억원 미만	80억원 미만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	235억원 미만

- 3. 적용기간:** 2019.01.01. ~ 2020.12.3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범위 등 고시금액 변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범위 등을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경 고시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6호(2018.12.31.)

##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 변경

○ 240억원 이상 ⇒ 235억원 이상

## 2. 시행일자: 2019.01.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 개정(2018.1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예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4, 405, 407, 411, 412호(2018.12.31.)

## 1.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주요 단가기준 입찰공고 시 명시 의무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 단위당 가격, 가격 공표기관, 적용시기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 2019.03.05.부터 시행

## 2.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시

## 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참가 제한 기준 완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4호)

(기준)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 ⇨ (개정) 6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자  
※ 부실시공, 담합,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뇌물제공자

## 4. 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

○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 5.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항목에 추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 입찰 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및 실비정산

## 6.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마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

○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 15개의 가격 작성

## 7.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만점기준 마련(적격심사기준)

○ 하도급 계약할 금액이 원도급업체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  
○ 하도급 계약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  
※ 2019.03.05.부터 시행

## 8. 지체상금 최대 상한 금액 명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최대 계약금액의 30/100 이하(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 2018.12.04. 이후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9. 강교 등 해당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에 대한 비용100%까지 기성으로 인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인정되는 자재에 한함

## 10. 하자 최종 검사일에 대한 명확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기존) 하자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이내 ⇨ (개정) 하자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 11.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 12. 시행일자: 2019.01.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참고사·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0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을 주요 내용

법률 제16136호(2018.12.31.)

#### 1. 건설공사 시공자격(제16조 제1항)

○ 복수 업종보유 전문건설업체 종합공사 단독도급(제1호)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2호)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전문업종 간 컨소시엄(공동도급)(제3호)

· 2024.01.01. 시행

○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도급(제4호)

· 2024.01.01. 시행

#### 2. 상대업역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제16조 제3항, 제4항)

○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복수 업종보유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3.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제25조)

○ 발주자는 제16조의 도급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함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4.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제29조)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일괄하도급 금지(제1항)

· 일괄하도급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

·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종합업체 간 하도급의 경우 직접시공 의무 발생(재하도급 불가)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제2항)

· 종합·전문업체가 전문공사 수주 시 하도급 금지(직접시공)

· (예외) 전문업체는 발주자 승낙, 종합업체는 발주자 승낙+요건 충족 시 하도급 가능



- 재하도급 금지(제3항)
  -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금지
  - (예외)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은 종합업체가 재하도급 한 경우(제1호)
    - ※ 하도급 받은 전문업체는 현행과 같이 일부 재하도급 허용
- 10억원 미만 공사 도급 시 종합업체에 하도급 금지(제4항)
- 전문업체 종합공사 수주 시 일부 하도급 허용(제5항)
  - 요건: 발주자 서면 승낙 + 요건 충족 시(대통령령) 일부 하도급 허용
- 하도급 통보(제6항)
  - 수급인,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함
  - (예외) 발주자 승낙받은 하도급, 재하도급인 경우는 제외
- 5. 직접시공 의무비용 산정방법 개선(제28조의2 제1항)**
  - 건설업체 노무비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 2019.07.01. 시행
- 6. 건설기술자 하위보유 적발 강화(제49조의2)**
  - 등록기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관련 자료요청 근거 마련
    - 2019.07.01. 시행
- 7.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 공개(제31조의3)**
  - 하도급자 선정 시 입찰 전에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 공개(제2항)
    - 공공: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예정가격(기초금액), 공사기간
    - 민간: 설계도면(발주자 제공 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 ※ 미공개 또는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9조)
    - 2019.07.01. 시행
- 8. 공동도급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통지의무 신설(제22조 제8항)**
  - 민간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서면 통보의무
    - ※ 미통보, 통보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9조)
    - 2019.07.01. 시행
- 9. 시행일자: 2021.01.01.부터**
  -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 제3호의2 및 제7호의2 → 2019.07.01. 시행
  - 제16조, 제25조, 제29조 → (공공) 2021.01.01. 시행, (민간) 2022.01.01. 시행
  -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2024.01.01.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665호(2019.03.26.)

- 1.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제30조의2)**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 7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제34조)**
  -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 64%로 확대
- 3.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 수 조정(제35조)**
  - 3~5억 미만 공사: 3개 현장 → 2개
  - 3억 미만 공사: 1인 기술자로 3개 현장 중복배치

## 4. 용어 수정(제35조 등)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 5. 시행일자: 2019.03.26.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614호(2019.03.26.)

#### 1. 직접시공 실적 가산(별표1. 제1호 가목, 별표2. 제1호 가목)

-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합산

#### 2. 현장경력자 창업 시 인센티브 부여(별표1. 제1호 다목, 별표2. 제1호 다목)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배

#### 3. 부당 내부거래 시 공사실적 삭감(별표1. 제1호 라목, 별표2 제1호 라목)

-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 4. 시행일자: 2019.03.26.부터

- ※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은 2019.08.0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비작업일 수 산정기준, 공종별 표준작업량 등이 포함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2019.01.01.)

#### 1. 주요 내용

- (목적) 공사기간의 산정과 변경 업무의 효율적 수행(제1조)
- (주의사항) 발주청의 공사기간 부당삭감, 과잉 계상 금지 등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제3조)
- (결정절차) 발주청은 결정 공사기간과 그 산출 근거 현장설명서(계약특수조건)에 명시(제4조)
-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제5조)
  - 준비기간: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제시(포장공사 50일, 강교시설공사 90일 등)
  -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기후여건(기상정보, 작업제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 제외
  - 작업일수: 공종별 표준작업량(별표3) 및 발주청 보유 실적 활용하여 산정
  - 정리기간: 주요 공종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 (공사기간 조정) 발주청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 지연, 불가항력(태풍, 홍수) 사유 등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 조치(제16조)
-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현장설명서(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시공조건과의 차이로 공사수행 지연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제17조)

## 2. 시행일자: 2019.03.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39호(2018.12.31.)

#### 1. 주요 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개선(제4조)
  - (현행) 건설업은 근로자대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개정)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음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제32조, 별표6의5)
  - 2억원 이상 공사현장: 2019.07.01. 시행
  - 1억원 이상 공사현장: 2020.01.01. 시행

구분	현행	개정
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적용제외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횟수	월 1회 실시	월 2회 실시

- 건설업 산업재해발생을 산정기준 개선(별표1)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
- 석면해체·제거 관련 처벌 강화(별표20)
  - (현행)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 시 등록취소
  - (개정) 1회 이상 벌금형 시 6개월 작업중지, 2회 이상 등록취소

2. 시행일자: 2019.01.01.부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2018.12.31.)

#### 1.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제7조, 별표2)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 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 비용
  -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 소화기 구매비용

2. 시행일자: 2018.12.3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6135호(2018.12.31.)

#### 1. 신기술사용협약 법적 근거 마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14조의2)

- 기술개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협약기간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

#### 2. 건설기술용역업자 발주청 실정보고 의무 신설(제39조의3)

- 건설업자가 현지어건 변경 및 품질향상 위한 개선사항 검토 요구 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 및 발주청 보고를 의무화
- ※ (감리자) 실정보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발주청) 실정보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 공사감독자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범위 확대(제40조)

- (현행) 설계도서·시방서 등과 맞지 않게 시공
- (개정) 현행 + 안전 및 환경관리 의무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
-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4.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관리 강화(제62조, 제89조, 제91조)

- 건설업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착공 전으로 명확화
- ※ 승인 없이 착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건설업자 안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무화
- ※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및 거짓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5. 시행일자: 2019.07.0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사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외공사시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해외공사 국내법 적용 근거 마련 및 소송 시 한국의 법원에 소(訴) 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1. 용어 정의 신설(제2조)

- 현지법인(공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설립한 회사)
- 관련 법령(이 계약에 관한 준거법 <현지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을 말함) 등

####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해외공사 현장정보제공 의무화(제5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법령 중에 수급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제공

**3.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 설립 시 협력 의무화**(제6조 제2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

**4.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유상으로 판매 또는 대여 시 대금 수령 기일 준수 신설**(제12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유상으로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 그 대금의 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일(15일 또는 60일) 이후로 함

**5.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 대금지급 의무화**(제15조 제3항)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지급

**6.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신설**(제21조 제2항)

○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지급 부담 주체를 원사업자로 구체화**(제26조)

○ 원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제출 시 지체 없이 지급

**8. 수급사업자,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제40조 제3항)

○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리 신설 및 원사업자 협의개시 의무 부여

**9. 원사업자, 대물변제의 원칙적 금지**(제46조)

○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물품 지급 금지. 단 원사업자 부도, 파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으로 수급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

**10. 원·수급사업자의 비밀유지 신설**(제49조)

○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물품 지급 금지. 단 원사업자 부도, 파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으로 수급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 [비밀유지계약서 별도 신설(12개 조항)]

**11.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의 비용청구권 신설**(제50조)

○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설정 시 효력의 무효화 및 부당특약으로 수급사업자 비용 부담 시 원사업자에게 청구 가능

**12. 준거법의 적용 확대 <현지법 및 국내법>**(제59조)

○ 준거법 적용은 현지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함. 다만,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을 적용

※ 종전은 당사자 일방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법을 적용

**13. 소 제기의 재판관할 확대 <현지법원 및 한국법원>**(제60조)

○ 소 제기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 함

※ 종전은 당사자 일방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해당 소재국 법원이나 제3의 국가 법원에 소송 제기

**14. 시행일자:** 2019.01.13.부터

※ 개정일: 2018.12.28.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6272호(2019.01.15.)

#### 1. 법 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 (목적) 보호대상 범위 확대(제1조)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 (정의·신설)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등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실시 의무 부여(제77조)
  - ※ 안전·보건조치 / 교육실시 위반: 1천만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 (안전·보건 계획 수립)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신설(제14조)

#### 3.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도급인 책임 강화)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안전·보건조치 확대(제63조)
-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도급인이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작업 개시 연기 가능(지체책임 면제)(제65조)
- (도급인의 기계·기구 안전조치 신설)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작동하고 있거나 설치·해체·조립 등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76조)

#### 4. 도급 등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급, 수은·납·카드뮴 등의 제조·사용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제58조)
  - ※ 일시·간헐적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부장관 승인 필요) 예외적 허용

#### 5. 건설업 특례 신설(제3절)

- (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신설)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발주자 의무 신설(제67조)
  -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상 작성, 설계·시공단계에는 안전보건대상 이행 등을 확인
  - ※ 조치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기단축 공법변경 금지) 발주자(도급인)는 설계도서에 따라 선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금지(제69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려는 자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주는 등록업자 사용(제82조)

#### 6. 처벌 강화

-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강화
  - [현행] <직접고용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제66조의2)
  - [개정] <직접고용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5년 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제167조)



- [현행] <수급인(하청)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원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68조 제3호)
- [개정]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원청)>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5년 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제167조)
- [현행] <직접고용 근로자 의무위반 시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 제1호)
- [개정] <직접고용 근로자 의무위반 시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8조 제1호)
- [현행] <수급인(하청) 근로자 의무위반 시 도급인(원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68조 제3호)
- [개정] <관계수급인 근로자 의무위반 시 도급인(원청)>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69조 제1호)
- (양벌규정 강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벌금 강화(제173조)
  - ※ (현행)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 10억원 이하 벌금
- (수강명령 병과)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산재예방 수강명령 병과 근거 마련(제174조)

**7. 시행일자:** 2020.01.16.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 주요 내용**

법률 제16270호(2019.01.15.)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제76조의2, 3 신설 및 제93조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문화 및 금지 의무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 괴롭힘 신고접수·인지한 경우 조사 및 적의 조치
  -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
  - ※ 위반 시(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19.07.16.부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 전 취업규칙 제·개정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2.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정비·단순화

현행(제35조 삭제)	개정(제26조 개정)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기간제) 2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등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 (이유) 법원 위헌 판정 및 혼란 방지

**3. 시행일자:** 공포 즉시(2019.01.15.부터)

- 2019.01.15.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최근 개정 하도급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여,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

- 부당특약 금지 조항 도입(2014.02.14. 시행)
- 자진시정 면책제도 도입(2015.10.14. 시행)
- 신고포상금제 도입(2016.01.25. 시행)
- 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2016.01.25. 시행)
- 보복 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2016.12.27. 시행)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2016.12.27. 시행)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2016.12.27. 시행)
-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2016.12.27. 시행)
-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2017.10.19. 시행)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2017.09.29. 시행)
- 원사업자의 구매 확인서 발급 의무화(2018.05.01. 시행)
-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2018.05.01. 시행)
-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 근거 규정 마련(2018.05.01. 시행)
-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2018.10.18. 시행)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2018.10.18. 시행)
-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2018.10.18. 시행)
-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2018.10.18. 시행)
-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2018.10.18. 시행)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안내

협회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낙찰률 상향 조정 및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 인분 포함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19.01.04)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1. 적격심사 시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 3. 예정가격 작성 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소량구매 사급자재 단가에 적용하지 않도록 의무화

#### 4.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 2018.12.31. 계약예규 개정

#### 5.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6.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을 통한 입찰금액 상향 조정

○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현재 상위 40%, 하위 20% 제외)

※ 20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03

## 2019년 적용 주요 노동관련 제도 안내

### 1. 근로시간 단축(週 68 ⇒ 52h) 계도기간 연장

#### 가. 대상 및 기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계도기간(연장)	대상범위(사유)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 탄력근로제 기도입하였으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기업 · 탄력근로제 도입 진행 중인 기업(노사협의 공문 기발송) · 일시적 근로시간 준수 어려우나 탄력근로제 확대로 해소 가능한 기업
2019.03.31.까지	· 신규채용, 설비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으로, 자체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이미 제출한 기업

#### 나. 유의사항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단축근로시간(52h) 적용 자체의 유예는 아니며, 사업의 성격에 따른 불가피성, 당초 계도기간('18년 말까지) 중 개선 노력 여하 등 기업별 실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정책동향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 보안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 마련 및 조속한 입법 논의 중

(국회) 환노위(고용소위)에 탄력근로제 활성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다수 계류 중(2월 내 처리 목표)

(협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건설현장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 조기 시행을 관계부처, 국회 등에 지속 건의 중



## 2.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 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일환산액(8h)	월환산액(209h)
8,350원 ※ 전년(7,530원) 대비 10.9% 인상	66,800원	1,745,150원

###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 산입비율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 3. 사회보험제도 변화

### 가. 건설기계 1인사업주(건설기계 27종)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나. 사회보험 납부요율 변경

- 건강보험료율: 6.4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8.51%
- 산재보험료율: 3.75%
- ※ 고용보험료율 및 국민연금요율은 전년 동일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대상 제외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사용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제외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개정하였다.

### 1. 주요 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

-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19호 아목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제

### 2. 시행일자: 2018.12.29.부터

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리강화 안내

노무비 지급 관리·감독 강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일자리위원회, 2017년 12월)」에 따른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 지킴이)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면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06.19. 시행, 강훈 식 의원 발의)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 모든 공공공사에 도입 예정 중에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결과(2018년 12월) 본인이 아닌 타인계좌 노무비 지급 비율이 높게 확인되는 등 운영상 취약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노무비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주요 내용

- 팀반장으로서의 노무비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자 개별계좌 등록 후 직접지급
-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선지급 기능을 통해 근로자 본인계좌로 대금지급
  - ※ 단, 인력소개소 및 신용불량자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등록 후 타인계좌로의 지급 허용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증빙자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불가	본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수급인, 하수급인, 인력소개소 등 선지급	본인동의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06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부터 연식별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0~20년 연식의 타워 크레인도 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권상장치, 텔레스코픽 등) 안정성 검사
- 15년 이상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해체 후 비파괴 검사

## 국토교통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2017년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여,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 1. 건설산업 생산구조 규제 혁신

-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2. 건설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기술력 중심 발주제도 개편
- 중소 건설기업 성장경로 지원

#### 3. 부실·불법업체 퇴출

-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4.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 건설 근로환경 개선
- 숙련 기술자 및 기능인력 육성

#### 5.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조성

-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6.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 공공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
- 대형 건설기업 등 불공정 행위 근절

#### 7.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

- 핵심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민간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 촉진

#### 8. 안전 확보 및 신시장 창출

- 스마트 인프라 발주 및 노후 인프라 개선
- 친환경 건설 활성화 및 건설안전 확보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 안내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부산지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 안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2018.12.31.)】이 개정되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가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토목 150억) 미만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토목 1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적용 제외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횟수	월 1회 실시	월 2회 실시

- 3억원 이상 공사현장: 2019.01.01. 시행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현장: 2019.07.01. 시행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현장: 2020.01.01. 시행

####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경남 진주	055-757-5594
2	(주)미래건설안전건설팅	경남 창원	055-263-6391
3	(주)부산안전원	부산 북구	051-714-2898
4	(주)서경건설안전	경남 창원	055-287-0210
5	(주)영남재해예방연구소	부산 동래구	051-504-9141
6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부산 북구	051-341-0842
7	(주)한국안전기술원	울산 울주군	052-223-2129
8	산업안전관리(주)	울산 울주군	052-267-7438
9	삼한건설안전(주)	경남 진주	055-756-3488
10	성우안전기술단(주)	부산 사하구	051-527-2550
11	주식회사태평양안전	부산 해운대구	051-743-7088
12	주식회사한국전기통신안전	부산 강서구	051-927-1100
13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부산 수영구	051-611-3244
14	한국건설지원단(주)	경남 진주	055-762-9225
15	한국안전(주)	부산 북구	051-316-0300
1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	부산 동구	051-462-6710

중요!

09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영업지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타 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2019.02.01.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 ■ 입찰정보 조회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http://www.k-apt.go.kr)) 접속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서 지역별로 클릭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 입찰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10

## 2019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19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계수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산출표에서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이며 도입기계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2019년 1월 2일 현재 1,118.10원(1,000원 미만 절사)으로 책정하여 산출되었다. 환율에 3%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하며, 주연료 가격은 구입 조건 또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되지 않았다.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등 잡재료는 크랭크케이스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 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2019년 건설기계경비 산출표'를 참고하면 된다.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홍보자료 안내

### 고용노동부, 매월 안전보건 자료 제공·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배포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1월 홍보자료

- 사다리에 의한 재해 발생 현황
  - 최근 10년간(2008 ~ 2017년) 사다리로 인하여 38,859명이 다치고, 27,739명(재해자의 71%) 중상해
  - 노동자 317명 사망사고 발생
  - 사다리는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
- 사다리 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
  - 작업자는 안전모 필히 착용,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2.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3월 홍보자료

-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 경보 현황 확인 방법
    - 인터넷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활용(<http://www.airkorea.or.kr>)
    -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 대기정보” 활용
- 2019년 건강디딤돌 사업(건설일용직 배치 전·특수 건강진단 비용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특수 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
  - 지원대상: 건설일용직 근로자
  - 지원금액: 배치 전·특수 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1차, 2차 검사항목)
  - 신청방법: 건설일용직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건설일용직으로 취업한 해당 건설현장 업체(사업주)가 신청
  - 기타안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또는 ‘사업소개’ → 건강디딤돌
  - 문의사항: 특검분야(☎ 052-703-0782~3)

※ 각 홍보자료 세부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개정사항 활용 안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배제, 입찰공고 시 명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 배제 및 입찰공고문 명시,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동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부산시회는 2019.02.18.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안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건설업체들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협조했다.

더불어, 시회는 동 개정사항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 시기 등 개정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2018.10.05.)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제5조 제1항, 제4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발주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 적용하지 않고 금액 조정 없이 반영
- 발주자는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공고문 명시 예시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0,000,000원	0,000,000원	000,000원	00,000,000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2. 공사금액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제4조 제3항)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변동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시 낙찰률 배제될 수 있도록 조정 계상 기준 마련 (별표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3. 시행일자: 2019.01.0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2018.12.31.)

##### 1. 확대 항목 주요 내용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 시 유도·신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별표2 제1항)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기능성 보호 장구(별표2 제3항)
-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별표2 제6항)
-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제7조 제1항 제6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제7조 제2항 제2호)

##### 2. 시행일자: 2018.12.31.부터

13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하였기에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1. 주요 내용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나.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2. 시행일자: 2019.02.13.부터

중요!

14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안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처분 유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도급(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대장 미작성 또는 미통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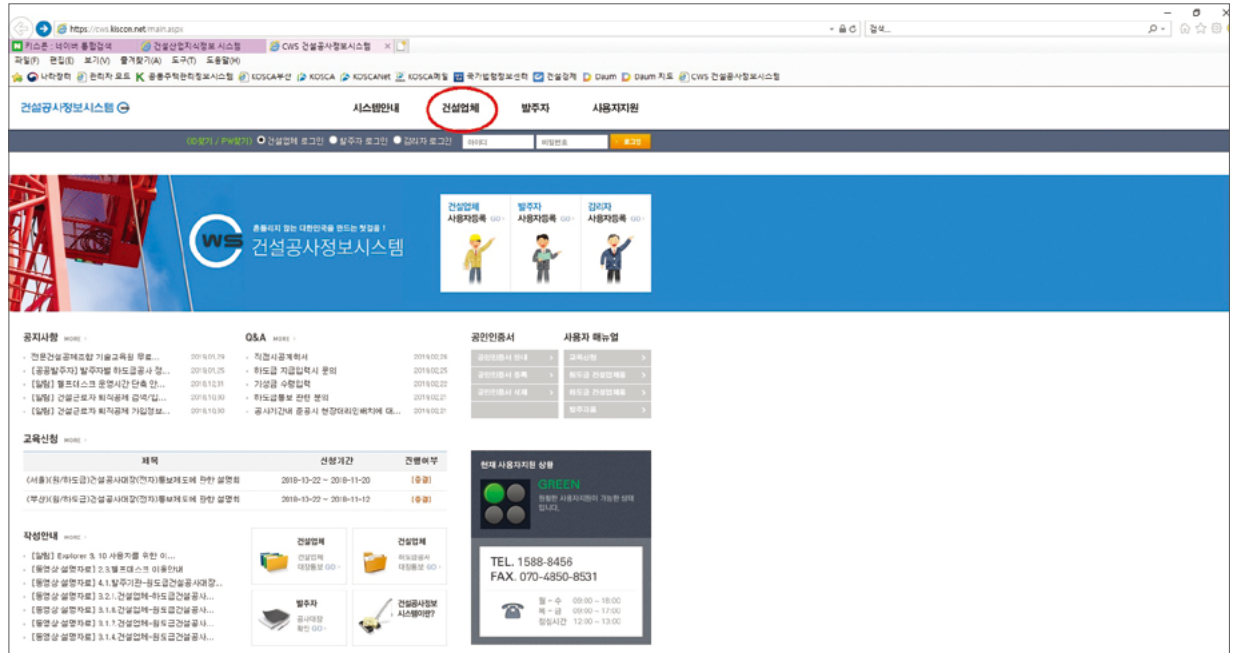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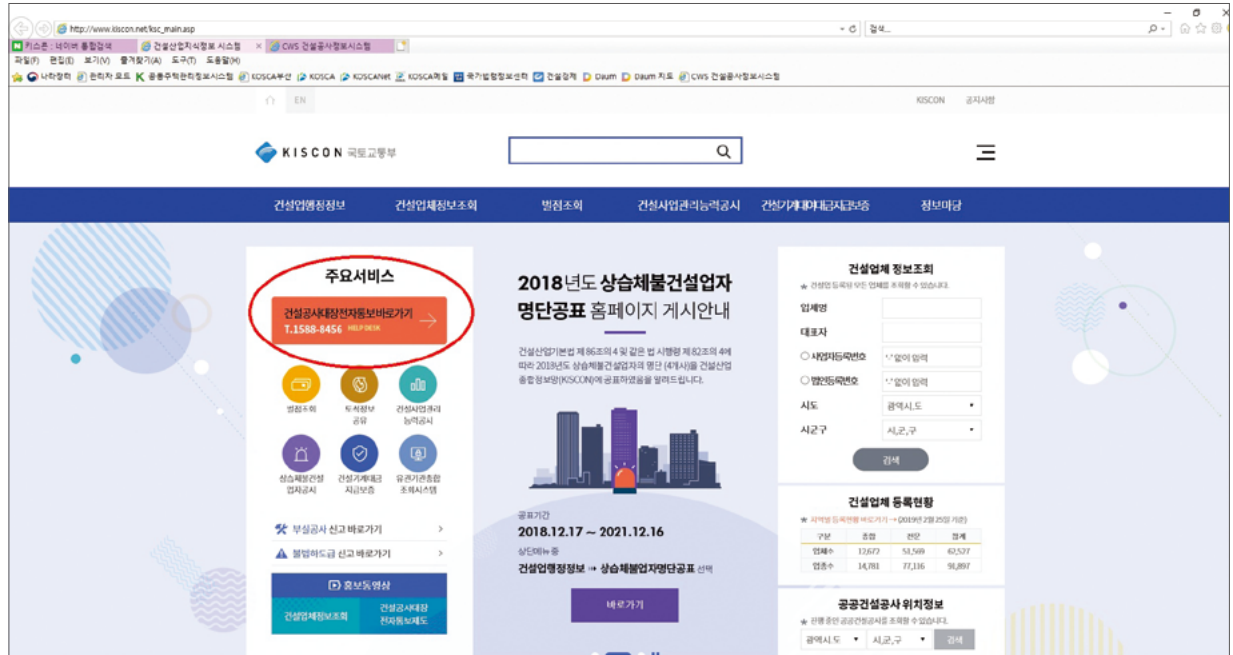
이에 2019.03.05. 시회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원도급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법 제99조 제11호): 과태료 100만원
    -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법 제99조 제3호)(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고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함(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2.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구군청 및 우리 사회로 기재사항 변경신고
- 위반 시 제재사항(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중요!

15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 발주자 합의(날인)가 없는 허위 합의서 난무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하고 있다.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대상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등급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받기 위해 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를 한 후 발주자의 합의(날인)를 받지 않고 합의서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회는 2019.03.05. 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발주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이 직접지급되지 않으므로 발주자의 직불합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날인을 받은 직불합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회원사에 당부했다.

16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설명자료 안내

고용노동부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01.15.)에 대한 홍보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6272호(2019.01.15.)

####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 새로운 노동관례를 고려한 보호대상 확대 추진 예정

## 2.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도급금지, 도급승인,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예외적 사내도급 허용
  - 일시간헐적인 작업
  -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 3.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확대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가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사업주가 5년 내에 2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

## 5.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건설공사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겨야 함

## 6.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

## 7.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필요
-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 참여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신설·개선

## 8. 시행일자: 2020.01.16.부터

- ※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2021.01.16.부터 시행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2021.01.01.부터 시행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17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안내

부산사회는 3월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장별로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 ■ 중요

- 2018.07.31.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공사는 2020.07.31.까지 월 20일 기준 적용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함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선금의 신청 및 지급 가능 여부?

- ?
 공사 계약 체결 후 선금은 언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총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서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금은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상으로 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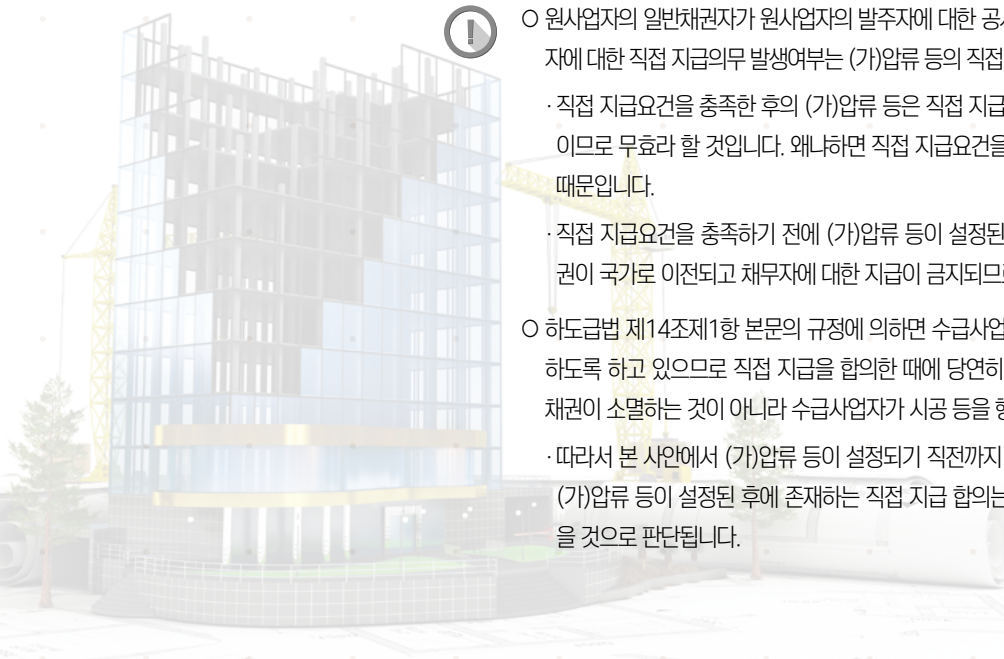
[근거] 국민신문고>유사민원 (2019.03.28.)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시 하도급대금 직불 가능 여부?

-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발주자인 당 공사로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직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가)압류 등의 직접 지급요건 충족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직접 지급요건을 충족한 후의 (가)압류 등은 직접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해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등 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직접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가 문제인데, 압류 등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의 처분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 지급을 합의한 때에 당연히 직불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행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직전까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후에 존재하는 직접 지급 합의는 (가)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직접 지급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민신문고>유사민원 (2019.01.18.)





## 건설판례 01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 ? 판시사항

- ①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 ②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③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급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른바 IMF 사태와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⑥ 이례적인 경우가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⑦ 준공예정일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완공기한 다음날)
- ⑧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감액 기준

### ! 판결요지

-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총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총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 ②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 ⑥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⑦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
- ⑧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건강한 노년의 비밀!

# 노쇠를 막아라

글 송정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 증상을 겪는다.

쉽게 병에 걸리거나 가벼운 질환에도 회복이 더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기능 저하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노화(Aging)와 노쇠(Frailty)는 개념이 다르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다.

100세 시대,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노쇠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노쇠의 원인



노화는 신체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다. 나이 탓일 수도,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노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쇠라고 말한다. 젊을 때와 달리 가벼운 질병도 회복이 느리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곤함과 무기력함,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노쇠는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니다. 노쇠한 노인은 낙상이나 치매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건강한 노인에 비해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불과 1~2년 전에 비해 병에 쉽게 걸리고, 원인 모를 피곤함을 호소하면 노쇠를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노쇠의 흔한 증상으로는 식욕저하와 체중감소가 있다. 이는 근력 감소를 초래하고 근력이 약해지면 보행이 어려워진다. 활동성이 줄어들면 다시 근육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져 골절이 잘 되는 등 악순환이 따른다. 활력 감소, 허약, 보행 속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뒤따라온다. 이에 결국 수많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입원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가 된다. 노쇠한 노인은 같은 질병으로 치료해도 노쇠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노쇠의 무수히 많은 원인 중에는 복용하는 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먹는 약이지만 종류가 많으면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작용이 얹히고설켜 인지기능 저하, 전립선비대증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 노쇠, 막을 수 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노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이미 노쇠해졌다 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잘 찾아서 교정하면 노쇠로 인한 여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노쇠 노인 966명을 5년 추적 관찰한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31.9%는 영양 섭취나 운동 등을 통해 전 노쇠 단계로, 7%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고 한다.

노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백질 섭취다. 노인은 몸무게 1kg당 1.2~1.5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 매 끼니마다 생선 한 토막이나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고기 등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근육량이 증가해 노쇠를 회복하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근력 운동이다. 근육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기력이 없고 귀찮다고 운동을 소홀히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력운동은 앉았다 일어나서,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정도로 충분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가벼운 아령 들기, 스쿼트로 넘어간다. 일주일에 적어도 2~3회, 2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좋다. 또 다른 예방법인 유연성 운동은 신체의 수행능력을 강화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리미 없이 옷 주름 펴는 법



급하게 출장을 갔는데 숙소에 다리미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다리미 없이도 구겨진 옷을 펴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분무기에 찬물을 채우고 드라이어를 준비한다. 옷걸이에 걸린 옷의 구겨진 부분에 분무기의 물을 뿌린다.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말린다. 스팀다리미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에 젖은 부분이 무거워 늘어진 상태에서 드라이어의 뜨거운 열이 물을 순식간에 데워서 주름이 펴지게 한다.

둘.

내 땅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까지?



땅을 사고팔 때나 공사할 때, 땅의 경계를 놓고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경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 측량 접수창구'에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하면 정확한 땅 경계 측량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땅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청한 지 5일 이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 측량 업체에서 측량을 하고, 이후 정확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셋.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식·의약품 성분 검사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먹거리나 생필품에 문제가 발생하니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 만약 식품이나 의약품 속 성분이 의심스럽다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용해 청원을 넣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의심되는 제품 검사를 홈페이지에 청원하고, 30일 동안 추천을 받아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며,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모두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 하도급 분쟁 해법

공정위 신고 후  
합의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문건설회사가 대기업 상대로 신고 했다. 처음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재하는데 신고인이 통상적으로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공정위 지방 사무소로 사건이 정식으로 이첩된다. 그러면 사건 담당사무관은 또 중재를 시킨다.

하도급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므로 중재를 해서 빨리 신고인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피 신고인을 불러서 웬만하면 합의를 유도한다. 그래서 종종 공정위 담당자가 금액조정을 해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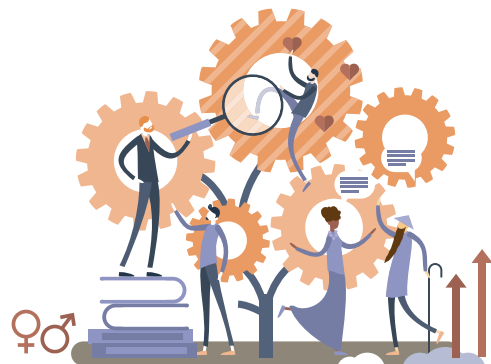
이때 공정위의 합의안은 대기업의 입장을 듣고서 금액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정하면 되지만 신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10%에 불과하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70~80%가 반영되면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50%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의 재무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신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 중재안을 거부했을 때 한 푼도 못 받고 끝까지 공정위의 처분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넘는 기간에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중소기업은 대체로 그렇지 못해 판단이 어렵다.

재정적 측면 외에 중재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3배소 소송 관련 하도급법의 핵심조항 위반 여부이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보복조치, 기술탈취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위반했다면 공정위의 처분을 받고 3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소 관련 조항 위반이 없을 경우에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 본들, 실익이 없으므로 그냥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 것이 좋다.

###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나의 작은 농장

## 에그리테인먼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시인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농업(Agriculture)과 오락(Entertainment)을 결합한 에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 '도시농업'이 뜨고 있다. 건물 옥상, 주말농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사계절 내내 작물을 기르기 좋은 베란다 텃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거창한 준비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 꿀팁을 소개한다.

### 텃밭을 위한 준비과정

베란다 텃밭을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방수와 배수다. 제대로 된 방수처리 및 배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에서 무작정 텃밭을 가꾸었다간 곰팡이의 습격을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먼저 방수 시트를 깔 다음 배수구를 내는 것이 좋다.

본격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흙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이 상토인데 실내 재배 시 상토만을 가지고도 채소를 충분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흙과 더불어 텃밭 가꾸기의 핵심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물 주기이다. 채소의 잎을 피해 상토에만 스미도록 주는 것이 잎에 생기는 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텃밭이라고 해서 무조건 튼튼하고 무거운 용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특히 흙의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초보자의 경우는 더더욱 투명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볍고 작기 때문에 첫 작물 재배용 화분으로 안성맞춤이다. 베란다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물엿 또는 우유를 희석해 잎에 뿌려주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 퇴치할 수 있다.

건강한 작물을 위해서 물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흙과 채소의 상태를 체크해가며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겉흙이 마른 오전 중에 흠뻑 주는 것이 좋고 만약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소독 성분을 없애기 위해 하루 정도 받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식물의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







향긋한 허브를  
키우고 싶다면

‘**상차질**’

텃밭에 많은 신경을 쓰기는 힘들지만  
도전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는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허브 종류가 알맞다.

혼자서도 잘 자라며 키우기 쉬운 채소가  
바로 허브다.

특히 바질은 샐러드나 파스타,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물도 겉흙이 말라간다 싶을 때  
한 번씩 주면 되며,  
벌레도 잘 생기지 않는 편이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잘 자란다.



실용적인 작물을  
원한다면

‘**고추**’

고추는 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물 중 하나다.  
흙에 바로 심는 것도 좋으나  
눈으로 발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에 물과 함께 담근 후  
발아가 확인된 씨앗에  
한해 하나씩 심는 방법을 추천한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다른 과채류에 비해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그만큼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면 일주일, 보통 10~15일은 넉넉히  
기다려야 한다.



무난한 텃밭을  
꿈꾼다면

‘**잎채소**’

베란다 텃밭에 가장 무난한 작물로는  
잎채소가 제격이다.

초보 농부라면 ‘상추, 치커리 등  
잎채소 모종 → 새싹채소 → 열매채소 →  
뿌리채소’ 순으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베란다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상추와 양상추 품종은 수십 가지인데,  
다양한 품종 가운데  
베란다 텃밭에 가장 추천하는 상추는  
바로 청치마 상추 품종이다.

식탁에 올리기에 좋고  
여러 차례 수확할 수 있어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회원사 현황

##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 01. 01. ~ 03. 31.

 <p>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1236호 (대연동, 21센추리시티오피스텔)</p> <p><b>T. 051-610-1197</b></p> <p>보유업종: <b>실내건축</b></p> <p>(주)가람아이앤씨 <b>김병구</b></p>	 <p>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2길 86-20</p> <p><b>T. 051-723-0228</b></p> <p>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b></p> <p>(주)가온건설 <b>민구석</b></p>	 <p>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272번길 21-13 (회동동)</p> <p><b>T. 051-809-4106</b></p> <p>보유업종: <b>실내건축</b></p> <p>(주)강윤 <b>변종환</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28번길 154, 202호 (운천동, 태경에버리치)</p> <p><b>T. 051-501-2688</b></p> <p>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b></p> <p>(주)경전토건 <b>김희선</b></p>	 <p>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번길 51, 2층 (회동동)</p> <p><b>T. 051-722-5306</b></p> <p>보유업종: <b>조경식재</b></p> <p>(주)뉴그린존 <b>장기천</b></p>	 <p>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10번길 14, 2층 (망미동)</p> <p><b>T. 051-507-5260</b></p> <p>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주)넷시건설 <b>양예진</b></p>
 <p>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 12, 1003호 (덕천동, 이수빌딩)</p> <p><b>T. 070-4173-7388</b></p> <p>보유업종: <b>토공</b></p> <p>(주)다경토건 <b>서다솔</b></p>	 <p>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북로 47, 지하 1층 (초량동)</p> <p><b>T. 051-959-5784</b></p> <p>보유업종: <b>습식·방수</b></p> <p>다운FP <b>전우영</b></p>	 <p>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60, 201호 (남산동)</p> <p><b>T. 051-711-1124</b></p> <p>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b></p> <p>대륜건설(주) <b>장재석</b></p>
 <p>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개로54번길 25 (부곡동)</p> <p><b>T. 051-583-2429</b></p> <p>보유업종: <b>상·하수도설비</b></p> <p>(주)대목건설 <b>곽장현</b></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79번길 144, 3층 (당감동)</p> <p><b>T. 051-898-0408</b></p> <p>보유업종: <b>비계·구조물해체</b></p> <p>대진산업개발(주) <b>주우석</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향로339번길 137-11 (대저2동)</p> <p><b>T. 051-831-8840</b></p> <p>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대한기술개발(주) <b>신미옥</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120, 상가동 302호 (운천동, 온천대동다숲)</p> <p><b>T. 051-508-4550</b></p> <p>보유업종: <b>토공</b></p> <p>도영건설개발(주) <b>김경희</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07번길 10, 1층 101호 (운천동)</p> <p><b>T. 051-556-0482</b></p> <p>보유업종: <b>도장</b></p> <p>도요건설(주) <b>문진근</b></p>	 <p>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1, 502호 (거제동, 울원빌딩)</p> <p><b>T. 051-555-2995</b></p> <p>보유업종: <b>토공</b></p> <p>(주)도요토건 <b>조한승</b></p>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 7층  
(부전동)

**T. 070-7703-8257**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동성  
**석상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54-1, 2층  
(거제동)

**T. 051-505-2036**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동호건설(주)  
**남원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352호  
(우동, 백스코)

**T. 070-4260-0038**

보유업종: **실내건축**

디자인엑시움  
**이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8번길 62  
(중동)

**T. 070-8766-5786**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디자인와이제이  
**김양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267호  
(우동, 백스코)

**T. 051-740-8900**

보유업종: **실내건축**

디자인폼  
**이영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마장로 20  
(범전동)

**T. 051-911-9995**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디자인혜움  
**이지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14, 3층  
(안락동)

**T. 051-853-0795**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리노종합건설  
**김두형**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08동 107호  
(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T. 051-796-3077**

보유업종: **도장**

(주)미성사  
**정순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 21  
(광안동)

**T. 051-756-0751**

보유업종: **도장**

(주)벽성기업  
**최철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7, 303호  
(전포동, 서면동원오피스텔)

**T. 051-808-0860**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부영산업  
**김태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2  
(양정동)

**T. 051-852-7797**

보유업종: **도장**

부일도장(주)  
**허재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02동 212호  
(대저2동, 티플렉스)

**T. 051-557-2675**

보유업종: **승강기설치**

비엘티중앙  
엘리베이터(주)  
**한명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3, 11층 1102호  
(초량동, 오피스텔프레지던트)

**T. 051-710-3658**

보유업종: **토공, 철근·콘크리트**

(주)상운건설  
**변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64번길 34  
(안락동)

**T. 051-521-0482**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세오이엔지  
**서희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하정로30번길 29-4  
(선동)

**T. 051-915-3975**

보유업종: **습식방수**

(주)승촌건설  
**김희권**

# 회원사 현황

##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 01. 01. ~ 03. 31.

 <p>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35, 4층 (금사동) <b>T. 051-817-6700</b> 보유업종: <b>도장</b></p> <p>(주)상상로드 <b>홍병유</b></p>	 <p>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3로 15, 201호, 202호 <b>T. 051-727-9982</b> 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씨비케이건설(주) <b>최병권</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왕길51번길 56 (대저2동) <b>T. 051-867-1995</b> 보유업종: <b>지붕판금·건축물조립</b></p> <p>(주)에이스기업 <b>김기홍</b></p>
 <p>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31, 5동 323호 (감전동,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b>T. 051-316-3012</b> 보유업종: <b>도장</b></p> <p>(주)에이치엔와이 <b>한종수</b></p>	 <p>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94, 202호 (만덕동, 럭키만덕아파트상가) <b>T. 051-338-2711</b> 보유업종: <b>토공</b></p> <p>에코하이(주) <b>김해경</b></p>	 <p>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학장동) <b>T. 051-312-5501</b> 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주)엠에스이엔지 <b>최병철</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13번길 14, 3층(생곡동) <b>T. 051-973-1766</b> 보유업종: <b>토공</b></p> <p>(주)엠에스파일 <b>유민상</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08번길 28, 2층 (온천동) <b>T. 051-505-1888</b> 보유업종: <b>토공</b></p> <p>에인건설산업(주) <b>김대웅</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85번길 135 (대저1동) <b>T. 051-971-3931</b> 보유업종: <b>비계·구조물해체</b></p> <p>(주)우승엔지니어링 <b>박효진</b></p>
 <p>부산광역시 수영구 489번길 14, 1동 302호 (남천동, 대성상가) <b>T. 051-754-7998</b> 보유업종: <b>실내건축</b></p> <p>(주)우진건축 <b>신갑진</b></p>	 <p>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105번길 40 (다대동) <b>T. 051-262-0271</b> 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b></p> <p>(주)월드강남 <b>서운수</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156 (대저1동) <b>T. 051-971-6934</b> 보유업종: <b>도장</b></p> <p>(주)유승페인트 <b>김재석</b></p>
 <p>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279, 2층 (망미동) <b>T. 051-759-7108</b> 보유업종: <b>도장</b></p> <p>(주)유한건설 <b>류동훈</b></p>	 <p>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223번길 13, 2층 (괘법동) <b>T. 051-248-1114</b> 보유업종: <b>실내건축</b></p> <p>(주)이노아이디 <b>이양결</b></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80번길 22, 601호 (좌동, 와이에이치프라자) <b>T. 051-817-5133</b> 보유업종: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주)이노팩스 <b>박승관</b></p>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113번길 12  
(거제동)

**T. 051-507-3541**

보유업종: 토공

(주)이자원건설  
**천병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18, 6층  
(연산동, 마린빌딩)

**T. 051-741-6289**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이탁건설  
**백문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0-1, 2306호  
(남산동, 신화하니엘)

**T. 051-583-8331**

보유업종: 실내건축

인스디자인  
**임호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94, 204호

**T. 051-724-7204**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자연건설(주)  
**이영철**



부산광역시 남구  
동영로 101번길 98,  
지하 1층 비101호(용호동)

**T. 051-628-2361**

보유업종: 조경식재

(주)재인조경  
**조영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천로52번길 6, 3층  
(남산동)

**T. 051-912-6100**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정우디자인  
**손창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115동 808호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T. 051-638-1269**

보유업종: 승강기설치

(주)제이비  
**김복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115동 808호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T. 051-638-1269**

보유업종: 승강기설치

(주)제이비  
**임강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93, 2층  
(운천동, 호정빌딩)

**T. 051-936-1012**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주)제이에이치안전  
**김현석**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93, 2층  
(운천동, 호정빌딩)

**T. 051-936-1012**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주)제이에이치안전  
**박진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69  
(죽림동)

**T. 051-972-2141**

보유업종: 포장

(주)제이원이엔씨  
**이은혜**



부산광역시 남구  
지계골로 62  
(문현동)

**T. 051-714-5602**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지온이엔씨  
**박다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천로 8-1, 4층  
(연산동, 조일빌딩)

**T. 051-853-1146**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지후이엔지  
**서명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8-1, 4층  
(운천동)

**T. 051-507-9990**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진성원양건설(주)  
**윤주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140  
(대저1동)

**T. 051-941-0932**

보유업종: 조경식재

청야건설(주)  
**박창호**

# 회원사 현황

##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 01. 01. ~ 03. 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18번길 24, 404호  
(우동, 해운대비치오피스텔)

**T. 051-201-4002**

보유업종: **습식·방수**

(주)케이티케미칼  
**김민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34  
(청룡동)

**T. 051-714-2802**

보유업종: **습식·방수**

(주)탑그린이피에스  
**임상혁**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34  
(청룡동)

**T. 051-714-2802**

보유업종: **습식·방수**

(주)탑그린이피에스  
**이대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8번길 5, 3층  
(재송동)

**T. 051-714-579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주)태인세이프  
**이성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329, 2층  
(양정동)

**T. 070-4962-2106**

보유업종: **토공**

(주)태흥이앤씨  
**김수현**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0  
(문현동)

**T. 051-622-2421**

보유업종: **조경식재**

(주)푸른숲조경  
**이승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향로239번길 96  
(대저2동)

**T. 051-271-3994**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유)한음이엔지  
**박종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8, 2층  
(중동)

**T. 051-633-9929**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해담건축  
**김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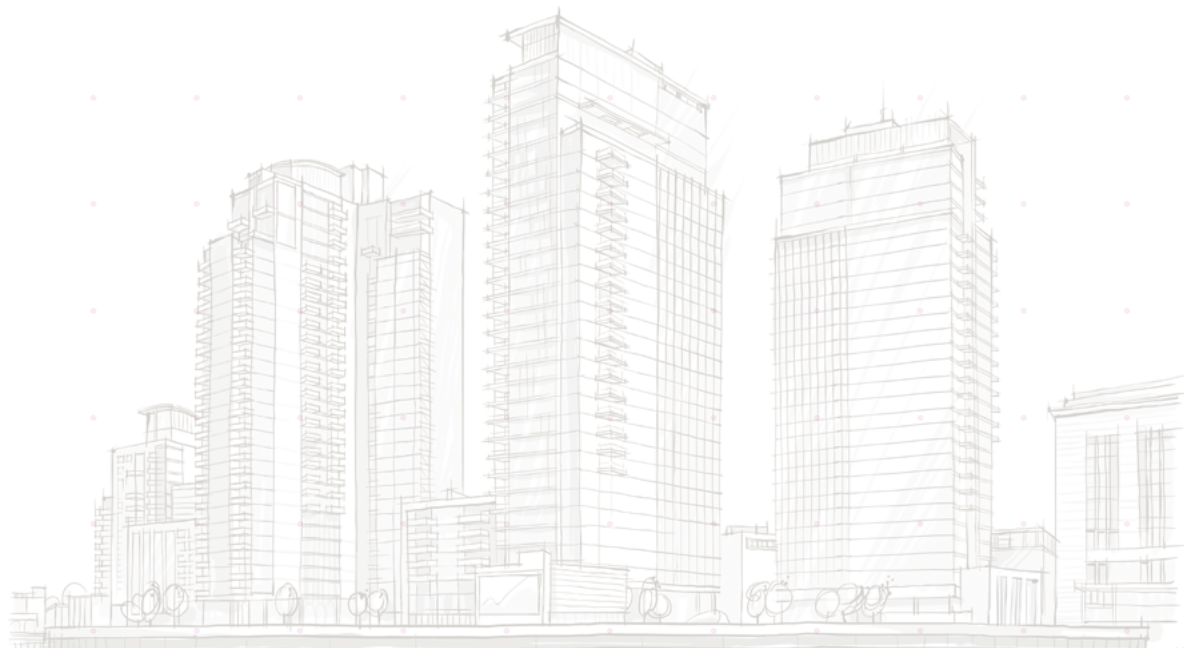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6로 163, 3층  
(화전동, 경남은행)

**T. 051-462-3455**

보유업종: **준설**

해안석유(주)  
**이영애**



##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9. 01. 01. ~ 03.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경보(대표: 문영근, 대전)	(주)고방(대표: 박희인, 경남)
(주)남흥개발(대표: 박진연, 경북)	(주)남지개발(대표: 이영규, 충남)
다길이엔씨(주)(대표: 이준호, 경기)	로토택다이아몬드건설(주)(대표: 송재구, 충북)
(주)덕산산업개발(대표: 최학영, 울산)	(주)배화건설(대표: 류도화, 경북)
(주)명부건설(대표: 명재현, 전남)	(주)우림조경개발(주)(대표: 박미애, 경북)
(주)백설토건(대표: 최기환, 경남)	(주)우성토건(대표: 신은영, 경남)
(주)보성산업개발(대표: 안유진, 경기)	(주)자이트건설(대표: 전원표, 경기)
(주)삼흥건설(대표: 이중기, 경남)	(주)테라건설(대표: 박범준, 광주)
(주)세종건설(대표: 권기욱, 경남)	한누리건설(주)(대표: 김보미, 경남)
(주)신성건설(대표: 류홍재, 울산)	-
(주)연정종합조경(대표: 조진경, 울산)	-
(주)유성에스디(대표: 문웅창, 경남)	-
(주)유승건설(대표: 이상호, 울산)	-
(주)탄성(대표: 김필순, 경남)	-
태운지질(주)(대표: 권용근, 대구)	-
(주)한라조경(대표: 이미향, 경남)	-
(주)화랑비앤피(대표: 김영애, 경남)	-

##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9. 03.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1	67	연 제 구	140	220
동 구	49	98	해운대구	219	301
서 구	25	30	수 영 구	114	172
사 하 구	72	96	부산진구	175	235
영 도 구	19	30	북 구	81	106
동 래 구	173	224	사 상 구	120	154
남 구	91	134	강 서 구	191	259
금 정 구	232	349	기 장 군	203	300
			합 계	1,935	2,775

#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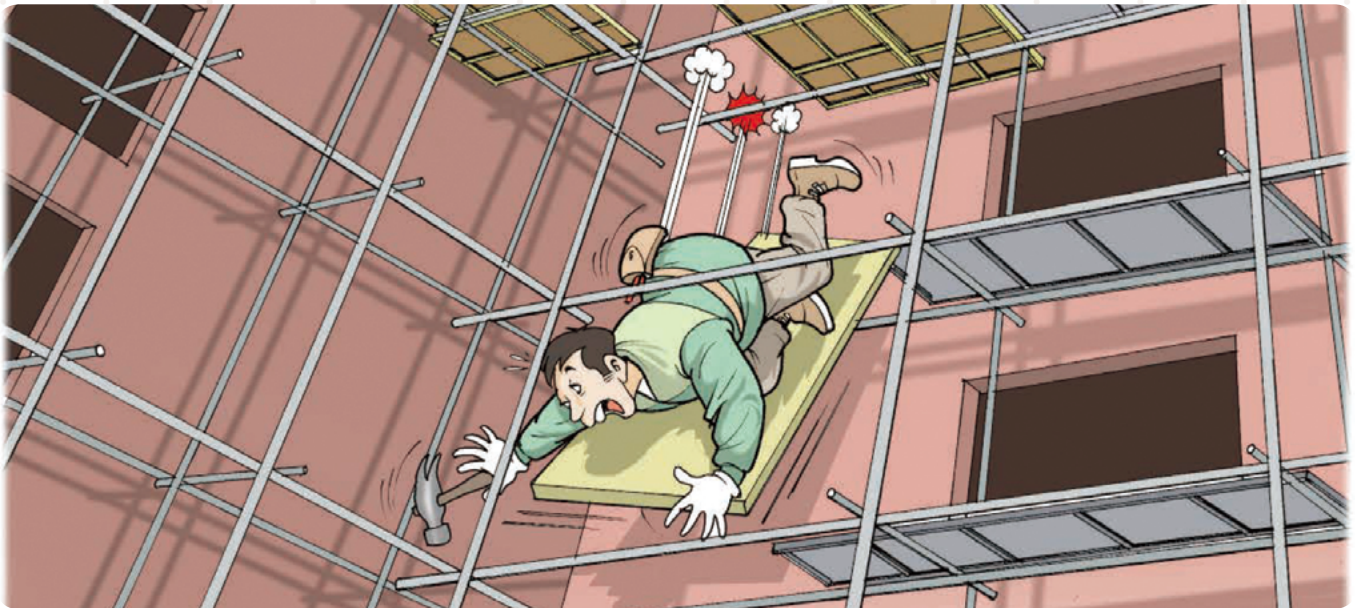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01.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이동 중 떨어짐(사망 1)

 공사명	OO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8.04.13.(금) 15:15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재해개요	2018.04.13.(금) 경기도 용인시 소재 OO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유로폼)을 밟고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면서 약 9.8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 비계 작업발판 고정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두 군데 이상의 고정조치 철저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상태 확인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 철저



## 02. R.C.S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해체작업 중 떨어짐(사망 1)

<p> <b>공사명</b> OO복합시설신축공사</p> <p> <b>재해형태</b> 떨어짐</p> <p> <b>소재지</b> 울산시 북구</p> <p> <b>재해개요</b></p>	<p> <b>발생일시</b> 2018.04.15.(일) 10:25경</p> <p> <b>재해정도</b> 사망 1명</p> <p> <b>공사규모</b> 복합시설신축공사</p> <p>2018.04.15.(일) 10:25경 울산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9층 콘크리트 벽체 해체공사를 위하여 계단 인근 RCS*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할석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물이 작업발판에 과다하게 적치되어 작업발판 지지대가 허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파단되면서 작업발판과 함께 지면(높이≈86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RCS: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으로서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틀과 콘크리트 타설 후 마감용 비계를 일체로 제작한 레일 일체형 시스템</p>
---	---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지지물 안전성 확보

- 해체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의 방법, 해체 순서도면 및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용

부산시회에서는  
회원봉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지역 종합병원 등과  
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체결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1	온종합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당감동)	607-0114
2	부산고려병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8(대연동)	930-3000
3	좋은강안병원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625-0900
4	(재)자생의료재단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93	791-5101
5	더스카이치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7번길 순천향빌딩 3, 4층	816-7528
6	이유치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KE빌딩 5층 502호	634-7504
7	스카이랩브란트치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 A+메디컬센터 5층	808-2875

— **수혜대상**

우리 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 **이용방법**

해당 의료기관 방문 ⇒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임을 고지 ⇒ 협회 사무처로 신분확인 ⇒ 의료혜택 지원

— **협약내용**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 의료기관 우선 진료서비스 제공
- 무료 건강상담 및 무료 건강강좌 지원
- 외래진료 등 비급여 부분 최대 20% 비용 할인(병원마다 상이함)

— **기타사항**

의료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기획관리부 (☎633-0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오랜 시간 자세변화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몸 컨디션 저하 및  
일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짧은 시간 투자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어른이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스트레칭 법을 소개한다.

✔ 딱딱하게 뭉친 목 스트레칭

장시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목, 어깨 뭉침이다.

심하면 통증이 느껴지고, '거북목증후군'처럼  
몸의 변형이 나타난다.

이럴 땐 틸틈이 스트레칭을 반복해  
긴장된 목과 어깨를 풀어주어야 한다.



- ① 팔을 들어 올려 머리를 감싸준다.
- ② 팔을 들어 올린 방향으로 목을 기울인다.
- ③ 목 옆쪽에 당김이 느껴질 수 있게 팔로 목을 천천히 늘려준다.



- ① 의자에 앉아 양손을 모은 뒤,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들어 올린다.
- ② 목 앞쪽이 당길 때까지 올린 후 10초 이상 지속한다.
- ③ 깍지를 긴 채 머리 위로 올려 고개를 숙인다.
- ④ 10초 이상 뒤통수를 지그시 누른다.

##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0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 교육과정

#### 1. 교육일자 및 장소(부산)

교육일자	교육장소
2019.06.21.(금)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호선 뱀내골역 4번 출구)
2019.09.20.(금)	

-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2.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3.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 2016.02.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 2016.02.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2016.02.11.)]
- 교육 참석대상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 개인: 대표자

#### 4.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 5. 교육비: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 🗨️ 신청방법

1.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2.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1076)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김영윤 중앙회장은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불공정행위로 병든 건설업계의 현실과 이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3월 8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체계개편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 김영윤 중앙회장은 3월 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대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 건단련은 지난해 12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직 신설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의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이를 허가함에 따라 건단련은 김영윤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3월 4일 창립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우수한 경영성과 달성을 축하함과 동시에 조합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8년 우수 평가 지점 및 부서 포상으로 조합 경영목표 달성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9년 보유공제사업 전환에 발맞춰 타 보험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설재해 공제컨설팅'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건설재해 공제컨설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사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조합 공제보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 접수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KOSCA 부산시회 2019년 2/4분기 주요 일정 안내

일자	주요 일정
2019년 5월 31일(금)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제출 마감(개인업체)
2019년 6월 중	부산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예정)
2019년 6월 중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예정)
2019년 6월 중	제2차 전문건설인 산행(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 (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더이지  
**박정순** 실장

수시로 바뀌는 건설업 법령과 제도에 헛갈리고 곤란할 때 찾아보는 코스카레터는 신규 회원사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소식과 정보는 소음과 먼지의 현장에서 종일 살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집처럼, 문화를 찾아 즐기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또 발견하게 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코스카레터!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주)비엠텍  
**김치웅** 대표이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과 건설 관련 주요 정책들을 코스카레터에 주기적으로 안내해주고 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과 편집, 발행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코스카레터로 변함없이 보다 빠른 건설정보와 여러 사례들을 전해주시고, 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협회가 돼주시길 바라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지난해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선진디엔씨 **김유정 과장**
- (주)한대건설 **이옥영 부장**

### ● 지난해 독자퀴즈 정답

- 10억 미만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 가능했다.

###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가능 공사>

-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019.03.26.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3억원 미만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 가능토록 하고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는 중복 배치 현장 수를 축소했습니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기술자를 몇 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가 가능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하시면(기간: **2019.05.31.(금)까지**)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운영 안내

※ 상담센터 주소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

## 운영 목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건설 하도급법령과 피해구제 절차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구제방안을 지원

## 센터 기능

하도급관련법령  
(하도급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상담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등

## 센터 운영

- 매주 수요일에 **대면상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 매년 2회(상·하반기) 전국 시·도회를 순회 방문, 회원사 상담 지원

## 상담 신청 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 ([www.kosca.or.kr](http://www.kosca.or.kr)) 접속
-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클릭
  - ➔ 신청서 작성 후 E-mail ([clean@kosca.or.kr](mailto:clean@kosca.or.kr)) 또는 FAX 02-3284-1091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